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8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3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2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에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라고 정해진 법정기념일의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u>산업재해근로자의 날</u> 로 하며, <u>산업재해근로자의 날</u> 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제9조의2(산업재해노동자의 날) ① -- ----- ----- ----- <u>산업재해노동자의 날</u> ----- <u>산업재해노동자의 날</u>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산업재해근로자의 날</u> 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u>산업재해예방교육</u> , <u>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u> 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u>산업재해노동자의 날</u> ----- <u>산업재해예방교육</u> , <u>산업재해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9조의2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여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관련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한편 2025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기념되게 되었는바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발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종전의 ‘근로자의 날’이 법 개정 이후 ‘노동절’로 기념되는 것과 용어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 노동의 자주성과 가치를 반영하려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명칭 역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법률안의 취지와 체계와 부합하고,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는 등의 최근 상황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법정기념일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여 법률적 효과의 변화 또는 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